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3010
- 발 의 자 : 광향기 의원(찬성자 21명)
- 발 의 일 : 2025년 8월 11일
- 회 부 일 : 2025년 8월 14일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으나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최하위인 지역으로,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밀도 상승, 과잉 경쟁, 출산 후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초산 연령 상승과 동반하여 난임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부부가 함께 참여하고 의지해야 하는 치료 전 과정에 동행할 수 있는 휴가 여건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은 시술종류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남성공무원의 경우 정자 채취일 단 하루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뿐 배우자 치료 시 동반할 수 있는 휴가 근거가 전무하며,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해 난임 치료를 위한 공무원의 휴가 여건 부족을 지적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안은 배우자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을 경우 남성 공무원에게도 동행 휴가를 허용하는 조례를 신설해 어려운 치료 과정에 부부가 함께 참여해 이겨낼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난임치료 시술 공무원 및 배우자의 특별휴가 인정(안 제24조제10항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5.8.20. ~ 8.24.)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에 동행할 수 있는 특별휴가 신설(안 제24조제10항)을 통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

조 문	주 요 내 용
제24조(특별휴가)	-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에게 배우자 동행휴가 부여 (제10항 신설)

-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¹⁾은 0.72명으로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1.58명의 절반 수준이며,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0.5명대를 기록하고 있고,²⁾ 높아지는 초혼과 초산 연령,³⁾ 환경호르몬과 생활 습관 변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 난임은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난임치료 건수('25.3.16.발표)는 20만건으로, 2019년 14만 6천 354건 대비 36.7%가 증가하였음.⁴⁾
 - 난임치료는 부부가 함께 정서적·신체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과정임에도, 현재 난임치료 휴가는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규정(「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1)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OECD가 회원국의 인구 변화를 비교하는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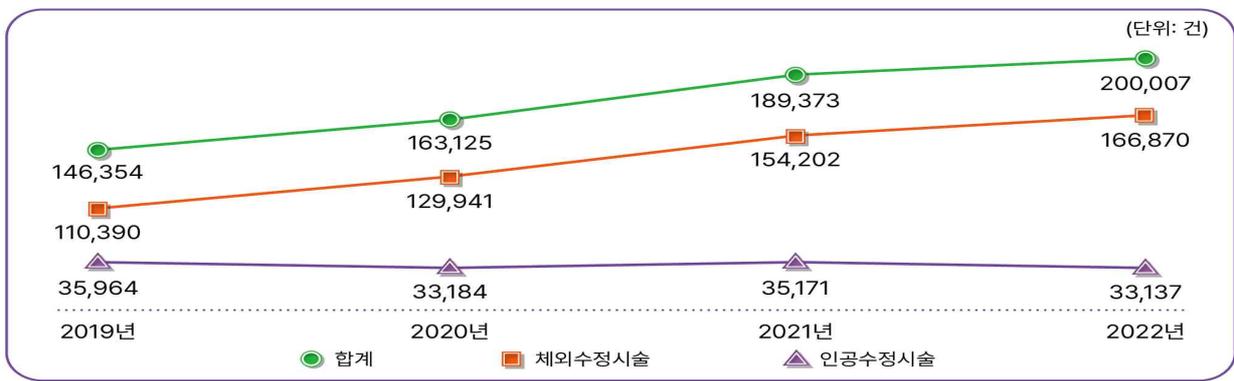
2) 안현찬 외, “서울시 양육행복도시 정책의 핵심성과지표 개발과 활용방안”, 『정책리포트』 제407호, 서울연구원, 2024.9.23., 4면 참조.

3) 2024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세, 여성 31.6세로 2014년 남성 32.4세, 여성 29.8세보다 상승하였고, 여성의 첫째아 출산 평균연령은 2010년 30.1세에서 2024년에는 33.1세로 상승하였음(통계청 보도자료, “2024 한국의 사회지표”, 2025년 3월 25일자 참조).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심사평가원, 국내 최초 난임시술 통계 발표”, 2025년 3월 26일자 참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제9항)하고 있어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대해서 남성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배우자 난임치료 휴가 규정을 신설하여(안 제20조제10항), 난임치료 시 배우자가 동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난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나아가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연도별 난임시술 건수 현황(2019년~2022년) 〉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심사평가원, 국내 최초 난임시술 통계 발표", 2025년 3월 26일자 재인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특별휴가)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 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 근로자의 배우자에게도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남녀공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626, 허영의원 대표발의, 발의일 2025.3.4.)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7월 18일에 상정되었음.

-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바, 6개 광역자치단체(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휴가로 배우자 난임치료 시술시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동행 휴가를 규정하고 있음(붙임 1) 참조).
- 한편, 2024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가 함께 난임치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난임치료 동행휴가제를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⁵⁾

※ 행정국은 서울 시도 난임치료 동행 휴가제 도입 및 본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원안가결에 동의하고 있음.

5)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난임지원제도, 국민 의견 바탕으로 편리하게 개선한다”, 2024년 12월 30일자 참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만, 남성공무원의 난임치료 동행휴가 신설은 상위 법령의 규정 이외의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난임치료 특별휴가는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가 있음에도 난임치료시간 보장을 위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해 동행하는 남성공무원까지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난임치료 휴가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 및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특별휴가 신설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인사권은 시장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의원 발의로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

붙임 1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남성공무원 난임치료 동행휴가 근거 규정 현황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 신설 및 시행일	내용
인천광역시	신 설 2023. 11. 9. 시행일 2024. 1. 1.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특별휴가) ⑬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시술 때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경기도	신 설 2024. 1. 10. 시행일 2024. 1. 10.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20조(특별휴가) ③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때마다 제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광주광역시	신 설 2024. 2. 23. 시행일 2024. 2. 23..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특별휴가) ⑪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매 시술 때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신 설 2025. 3. 7. 시행일 2025. 3. 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특별휴가) ⑪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에게 시술시 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 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신 설 2025. 3. 7. 시행일 2025. 3. 7.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특별휴가) ⑳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때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신 설 2025. 7. 11. 시행일 2025. 7. 11.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특별휴가) ⑭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마다 영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난임치료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25년 8월 12일까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복무 조례 검색 결과